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번호	422
------	-----

제출년월일 : 1997. 5 . 9 .

제 출 자 : 고 성 군 수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95.1.1법률제4828호) 규정에 의하여 '97.1.1일부터 농촌지도소 지도직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 직속기관인 고성군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근거를 규정코자 관련 조문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농촌지도소 관장사무 규정 (안 제2조)
 -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
 - 농촌생활개선사업, 농업경영개선지도
 -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약용작물 재배기술지도 등
- 지도소 업무수행을 위한 하부조직 규정(안 제4조)
 -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읍면 농민상담소

3. 본 문

고성군조례 제 호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설치)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추진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소(이하 '지도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업무) 지도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2.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
3. 농촌 생활개선 사업

4. 농업경영 개선지도
5.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약용작물 재배 기술지도
6.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7. 농업인 교육 및 지도
8.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소장)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조직등) 지도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과 정원 및 분장사무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이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